



연금저축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마련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연금저축¹⁾ 선택권을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연금저축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‘연금저축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’을 7월 17일 발표함.

- 최근 연금저축이 저조한 수익률과 공시정보의 낮은 비교 가능성 등으로 은퇴자산 적립이라는 본래 역할에 미흡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.
- 금감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익률, 수수료율, 유지율 등 공시항목과 각 협회, 금융회사 등 공시주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동시에 마련함.

■ 공시항목 개선방안에는 금융권역별 비교 가능성 제고, 소비자들의 이해도 향상, 불완전판매 예방 등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됨.

- 상품별·기간별 원금 대비 수익률을 협회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, 원금·적립금·계약자별 누적수익률을 정기적(연 1회 이상)으로 통지함.
- 수수료를 약관, 영업자료, 온라인에 모두 공시하며, 경과기간에 따른 ‘원금 대비 수수료’와 ‘적립금 대비 수수료’를 각각 환산하여 제시함.
- 가입 시 유의사항을 담은 ‘연금저축 핵심설명서’와 계약이전 시 수수료 및 유의사항을 포함한 ‘계약이전제도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, 기간별 유지율을 온라인 공시함.

■ 또한, 금감원은 공시주체들이 가급적 통일된 공시양식과 조회방식을 제공하고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각 주 설명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공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.

(연금저축 비교공시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, 금감원, 7/17)

1) ‘조세특례제한법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, 2001년부터 은행(연금저축신탁), 증권회사(연금저축펀드), 보험회사(연금저축보험) 등에서 판매 중임.